

별첨 #3

전형단계별 우대사항

장애인 :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부여

가점	항목
3% 가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취업지원대상자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점 부여

구 분	10% 가산	5% 가산
독립 유공자	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국가 유공자	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5.18 민주 유공자	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특수임무 수행자	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고엽제 후유의증	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보훈보상 대상자	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